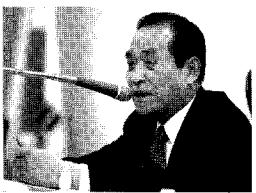




## 보도자료

2010년 5월 4일



국회의원 이용희  
(자유선진당, 충북 보은·옥천·영동)

Tel.(02)788-2565 Fax.(02)788-3330  
[www.yh.or.kr](http://www.yh.or.kr)

## 오리고기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도입골자 법률안 발의

이용희 의원은 국내 오리 생산 농가를 보호하고, 오리고기의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동시에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오리고기에 대한 음식점 원산지 표시 제도를 골자로 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의원 14명과 함께 발의하였다.

오리고기는 최근 웰빙 및 슬로우푸드 열풍이 거세지면서 연간 2조원에 육박할 정도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축산물인 동시에 오리고기의 소비가 80%가량 음식점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원산지 표시제 도입이 절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희 의원은 법안발의 배경에 대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국내산 농축산물을 찾을 수 있는 투명한 유통 구조를 확립하고, 한중FTA가 타결될 경우 값싼 오리고기가 물밀 듯이 수입되는 것을 대비하여 국내 오리농가의 보호를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input type="text"/>
----------	----------------------

발의연월일 : 2010. 5. 3

발의자 : 이용희 · 신학용 · 노철래 · 황우여

이인기 · 이진삼 · 이해봉 · 강기갑

김성순 · 정동영 · 이명수 · 임영호

김영진 · 유성엽 · 황영철 의원

(15인)

찬성자 : 인

### [제안이유]

축산물 중 오리고기는 1990년대 초에 수입자유화 품목으로 분류되었고, 최근에는 웰빙 및 슬로우푸드 열풍이 거세지면서 오리고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여 그 규모는 연간 약 2조원에 육박하고 있음.

그러나 오리고기의 소비가 약 80%가 음식점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농산물품질관리법」과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등의 원산지표시 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있어 값싼 수입산 오리고기가 불법으로 유통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국내 오리 생산 농가를 보호하고, 오리고기의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동시에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오리고기에 대한 원산지 표시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원산지 표시 대상인 농산물의 범위에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 중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오리의 식육 · 포장육 · 식육가공품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제1호).